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대정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 (2단계)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집행계획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02일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역사업의 집행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나. 용역사업의 개요

용역명	용역사업 주요내용	용역금액 (용역기간)	입찰예정 시기	비고
대정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2단계)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 차집관로 정비 : D100~D700, L=25.5km - 맨홀펌프장 신설 2개소 및 중계펌프장 개량 15개소	3,301백만원 (VAT 포함) (23개월)	2026.10.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 출장여비, 도서인쇄비 등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80호) 제11조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 반영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예정시기를 개별통지 하며, 용역비, 용역기간, 입찰예정시기 등은 우리 도 사정에 의하여 변경 될 수 있습니다.

2.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참가자격

- 가.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분야, 건설사업관리분야)전문회사로 등록된 업체
- 나.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 시설물 전문 또는 종합감리업으로 등록된 업체
- 다.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 수급업체 계열사인 감리전문회사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라. 당해 용역은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공동이행+분담이행)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되, “가”항의 자격을 갖춘자가 대표자로 “나”항의 자격을 갖춘자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시 각 공종별 참여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업별 분담비율	계	건설분야	전기분야
	100 %	97.9%	2.1%

-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 심사 세부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2026.6.29.)】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가점)을 적용하며,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함)가 아니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공동 도급시 도내업체 참여 지분율을 49%이상 권장함. 이 경우 평가대상 기술인을 지분율대로(전체 백분율의 ±10% 이내 조정가능)배치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입찰방법

-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제1호나목의 [별표3] 제1호에 따른 평가결과 87.5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 ※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 입찰일시 등을 개별통보하며 별도 통보가 없을 시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 나. 낙찰자선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2026.6.29.)】에 준합니다.
- ※ 해당용역수행능력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기술인 경력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를 모두 부여함.

5.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 가.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 : 2026.09.11.(금요일) (13:00~17:00)
- 나. 등록 및 제출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 다. 제출방법 : 직접제출(방문접수), 전자문서
- ※ 우편, 팩스, 쿼서비스 접수 등은 일체 불가하며,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라. 제출서류 : 1)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USB 1개, CD1개)
3) 업무수행계획서 8부(원본1부, 사본7부, 원본에만 업체명 표기)
- 마. 등록구비서류 : 대리참석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인감지참), 법인등기부등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등록증 사본, 전력시설물 감리업 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동도급 시 공동도급 협정서
- ※ 과업내용 및 평가자료는 다운(국가종합전자조달 및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받아 사용
- 바. 참여건설사업관리기술인 면접 일정 : 추후 개별 통보

6. 기타사항

- 가. 참가등록 용역업체의 대표자가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대표자 인감을 지참하여 참가등록을 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출하고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구비서류 : 건설사업관리업 등록증 사본, 전력시설물관리업 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용인감계(인감지참), 공동도급협정서(공동도급시), 위임시는 위임장, 재직증명서】

- 나. 평가서는 우리 도에서 정한 평가서 작성지침에 의거 사실대로 정확히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 보완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니 평가서 작성지침서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평가서 기재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됩니다.
- 라. 참여업체 및 기술인의 평가는 용역사업 집행계획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각 협회에 등록을 필한자이어야 합니다.
- 마. 본 평가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가 부담하며,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바.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투입한 기술인수, 착수일자 및 과업기간은 공사기간 공사의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체결 후 공사의 사업비가 변경될 경우 변경되는 사업비에 맞추어 건설사업관리용역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사. 본 평가자료는 평가자료 작성지침 및 과업지시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입찰참가제한, 낙찰 무효 및 계약이 해지됩니다.
- 아.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자에게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도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면접평가는 이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자. 참여업체 및 기술인의 평가는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 소속으로 재직 중인 자 이어야 합니다.
- 차.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상주기술인의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발주기관 포함)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이미 낙찰되었을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해당 건설사업관리업체는 낙찰사실을 우리 도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낙찰되었을 경우 낙찰을 취소합니다.

※ 참여기술인은 입찰 시까지는 반드시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입찰 전 퇴직시에는 해당 참여업체의 입찰참가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단, 참여기술인의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우리 도에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고 동등 이상의 등급, 경력 및 실적을 보유한 기술인으로 우리 도에 대체승인을 요구하여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체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경우 교체기술인은 재평가하되, 당초 기술인의 점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카. 유사용역 인정대상 사업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공단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수행중인 사업은 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를 산정)

※ 유사용역수행실적 인정 분야 : 하수관로공사(차집관로, 분류식 관로, 합류식 관로, 처리장 연계 관로, 처리장 포함 하수관로 인정)

타. 공동(분담)도급 시 책임기술인은 참여 지분이 많은 회사에서 배치하여야 하며, 평가 대상자에 대하여 업체별 참여기술인은 공동 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 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에 용역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 도급 시 PQ평가 대상자에 대한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하며, 전체 백분율의 $\pm 1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격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이외의 공종에 대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공동 수급체 구성원에 대하여는 유사용역 수행실적·기술개발 및 투자실적·교체빈도를 평가하지 아니한다.

파. 입찰참가대상으로 선정된 업체가 가격입찰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향후 우리 도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1년간 참가제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거. 입찰자는 반드시 국가·지방계약법,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064-750-7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는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대정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2단계)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 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 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정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2단계)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을 추진함에 있어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사 상하수도본부장 귀하